

교육부 소관 3개 안전 국무회의 통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피시(PC)방에서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 구체화 및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 완화
- 간호대 신설 시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교육과정 평가인증 신청 가능
-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 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대 등이 신설될 경우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법」 개정(2023.4.11. 공포, 2023.10.12. 시행 예정)에 따라 병가·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권주미 (044-203-6386)
담당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0)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913)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담당자	주무관	윤재일 (044-203-6486)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학원
의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47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정하여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에서 원격으로 어학을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관한 사항
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여
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
인강사로부터 어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원격으로 어
학을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의 학력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정하
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0.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별표 3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별표 3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u>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u>외국인등록사실증명</u>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u>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u>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u>외국인등록사실증명</u>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회)	

고 등 교 육 기 관 의 평 가 · 인 증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의 경우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신청을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 왔으나,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5.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6호 중 “방법·절차”를 “방법·절차, 인증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인정기관 지정서”를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로, “이내”를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4항”을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방법·절차”를 “방법·절차, 인증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제2항(인정기관이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 및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인정기관 지정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평가·인증 개요			
평가·인증의 종류			
평가·인증 주기			
지정의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제 호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평가·인증 개요			
평가·인증의 종류			
평가·인증 주기			
지정의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직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	② ----- -----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

④ -----

-----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

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4. ~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 ----- ----- ----- -----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 ----- ----- ----- ----- -----.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겸임) ①·② (생략)	제7조의2(겸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국가공무원법」 제

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43조제3항 -----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			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	--	--	--